

스마트폰 수험총서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정신건강복지법

- ☆ 1시간 20분 완성
-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정리
- ☆ 최근 법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도서명 : 정신건강복지법

ISBN : 979-11-7393-041-6

발간일 : 2025-07-04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8,500원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p16)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p46)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p67)

제5장 보호 및 치료(p74)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p101)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p125)

제8장 벌칙(p140~146)

[약어]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거부등은 거부, 방해, 기피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심의위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심의위 위원

심사위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심사위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험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자에 해를 끼칠 위험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에 이바지

2. 기본이념

가)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에서 보호받을 권리

나) 모든 정신질환자는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보장받고, 최적
치료 받을 권리

-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 받지
않음

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교육 받을 권리

라)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등(입원,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 우선 고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의입원등(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입소) 권장

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 하고 있는 모든 자는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자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 할 권리

바) 정신질환자는

-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와 종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
존중받음

- 자신에 법률적/사실적 영향 미치는 사안을
스스로 이해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도록
도움 받음
- 자신 관련 정책 결정과정 참여

3. 정의

가. 정신질환자

- 망상, 환각, 사고,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하는 데 중대한 제약 있는 자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교육/상담,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하는,
- 국가등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국가등의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 하는 기관/단체

라.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마. 정신의료기관

- 1) 정신병원
- 2)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 3)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바.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 제공

사.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 있는 자 중

다음 장애 가진 자(이하 정신질환자등)

사회적응 훈련, 생활지도

- 기질성 정신장애
- 알코올,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 조현병, 망상장애
- 기분장애
- 정서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 상기에 준하는 장관 고시 장애

아. 동료지원인

- 정신질환자등 상담, 교육하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이었던 자 중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한 자

4. 국가등의 책무

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재활/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 연구/조사, 지도/상담 조치

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해 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다) 정신질환자등과 가족에 대한

- 권익향상, 인권보호, 지원 서비스 종합 시책 수립/추진 노력

- 모든 차별과 편견 해소,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가족 권리 구제 책임,
차별/편견 해소 적극 조치

라)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재활, 자립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등과 가족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보 제공 등 시책 강구

마) 국민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 시책 강구

5. 국민의 의무

-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가등 실시 조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협력

6.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 하거나 사회적응 훈련 받으려 할 때, 지체없이 정신질환자등과 보호의무자에, 법/법률상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비치

-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 고지

나) 정신질환자등이 퇴원등(퇴원, 퇴소)시